

공정거래관계 업무추진경위 및 향후계획

본문은 본협회 윤리규약(제 5 조, 제 9 조)에 대한 경제기획원 공정거래위원회의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위배 여부 심의과정과 본협회의 업무추진 경위를 회원여러분에게 알리기 위하여 요약정리한 것입니다.

공정거래관계업무추진경위

1. 경 위

-85. 9. 20 본협회 윤리규약 제 9 조에 의거 건축사는 건축사업무에 관한 여하한 형태의 입찰에도 참가하지 아니함을 경제기획원(단체과)에서 직권인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7조의 규정에 의거 본협회는 사업자 단체에 해당되므로 81. 5. 31까지 경제기획원에 사업자단체 설립신고를 하여야 하나 85. 10. 26 현재까지 미신고 되어 있음을 경제기획원에서 지적, 건설부와 신고 협의)

-85. 10. 10 경제기획원에서 본 협회 방문 검토

○윤리규약 제 9 조(건축사는 건축사업무에 관한 여하한 형태의 입찰에도 참가하지 아니한다)에 대한 수정 또는 삭제 문제

-85. 10. 25 건설부로 부터 윤리규약 제 9 조에 대한 시정 요구(건축 30425-20749호)

-85. 10. 26 사업자 단체 신고

-85. 10. 29 신·구 임원협의회시 잠정적으로 공정거래대책 협의회 구성

-85. 11. 13 경제기획원 공정거래실 자료제출 요구에 의거 본협회 82~85년 윤리위원회 결정사항 제출

(설계자선정 방식에 대한 외국의 예를 제출 요구)

-85. 12. 3 건축설계 계약방식 및 설계자 선정방식에 대한 외국자료 요청(미국, 일본, 대만, 필리핀, 홍콩, 인도네시아를 포함한 13개국)

-85. 12. 4 공정거래 위원회 회의 개최 (1 차 심의)

일 시 : '85. 12. 4

장 소 : 경제기획원 공정거래위원회 회의실

내 용 : 대한건축사 협회는 윤리규약에 의거 다음과 같이 구성사업자들의 경쟁을 제한하는 행위를 등록하지 않고 시행한 사실이 있음.

○건축사는 보수의 할인 기타 부당한 수단으로 다른 건축사와 경쟁하지 아니한다. (윤리규약 제 5 조)

○건축사는 건축사 업무에 관한 여하한 형태의 입찰에도 참가하지 아니한다. (윤리규약 제 9 조)

○윤리규약에 위반한 회원에게 견책, 제명 및 업무정지 등 징계를 할 수 있도록 정관을 제정 이를 시행한 사실이 있음.

(정관 제10조 제 1 항)

-85. 12. 12 건설부 행정지시(85. 10. 25)에 대한 중간보고(추진경위 및 경제기획원에서 심사 계류중에 있음을 보고)

-85. 12. 14 공정거래 위원회 심의 보완자료제출 및 관계기관 협조 요청 "견의서" 제출

-86. 1. 9 문화공보부에 저작권법 운용에 관한 질의(저작권법 제 2 조(건축) 및 제 4 조(저작자)에 대한질의)

-86. 1. 14 공정거래관계 좌담회 개최 (86. 1 월호 건축사지 게재)

일 시 : 86. 1. 14

장 소 : 본협회 회의실

내 용 : 건축설계자 선정 방법에 관하여

-86. 1. 27 문화공보부 저작권법 운용에 대한 회신

-86. 2. 1 건축물의 설계 발주방식 및 제도에 관한 외국의 예(싱가폴, 말레이지아, 중화민국)을 포함한 추가자료 제출.

-86. 3. 7 공정거래 실장 주재관계기관 회의

참석범위 : 경제기획원, 재무부 국고국장, 건설부 주택국장, 문화공보부 문화예술국장, 조달청 시설국장, 대한건축사 협회, 주택건설회사(우성건설 (주))

-86. 4. 12 건축설계의 계약방법에 관한 재무부 질의 회신

-86. 5. 1 건축설계 계약방법에 대한 건설부 의견을 기획원 접수

-86. 6. 26 건축 3 단체 조찬회시 협의

-86. 7. 30 공정거래 위원회 개최 심의 (2 차), 경제기획원 공정거래실

-86. 8. 1 신문보도

-86. 8. 11 임원 및 각시도 지부장으로 한 대책위원회 구성(긴급 사안처리를 위하여 재경임원 및 서울지부장으로 실무위원 구성)

-86. 8. 12 공정거래위원회 시정명령 공문접수(단체 10661-1542)

2. 건축설계자 선정방법에 관한

관계기관 의견

가. 건설부 의견

-건축은 저작권법에서도 보호되는 창작 예술임.

-건축설계는 구격화된 상품이 아니고 설계자의 창작성 여하에 따라 그 성과물이 다름.

○규모 및 용도상 정형화, 단순화된 건축물은 표준설계도서(건설부 작성배포)로

제31조에 의거 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비영리 법인이며 건축사로서 사무소를 개설등록하는 자를 그 회원으로 하는 법정 단체임.

2) 협회는 회원인 건축사의 품위보전, 업무개선 및 건축기술의 연구·개발을 통한 건축물의 질적향상과 건축문화의 발전을 기하는 것을 그 설립목적으로 하고 있으며
3) 이러한 기본적 기능을 수행하기 위하여 조직과 운영 및 업무활동에 필요한 정관 및 윤리규약 등 각종 규정을 제정 운용하고 있음.

4) 이와같이 그 설립목적이나 기능으로 보아

○비영리성 법정단체임이 명백하고
○건설부장관이 인가·공고(경제기획원협의)
한 「건축사업부 및 보수기준」 범위내에서
업무활동을 하는 건축사를 그 구성원으로
하는 단체로서

○회원의 업무활동이 일반 또는 특수한 상품의 생산판매가 아닌 문화예술적 창작성의 비중이 높은 업무인 점과 특히 「건축」이 회화, 조각, 공예, 악곡 등과 같이 저작권법에 의한 저작물(저작권법 제1조 및 제2조)로서의 보호를 받고 있는 점 등을 감안할 때.

과연 당협회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의 제정목적이 뜻하는 시장지배적 지위와 사업자 또는 과도한 경제력의 집중을 가져오는 독점기업성 사업자 단체인지 여부와 또한 2 이상의 사업자가 공동의 이익(상업성)을 증진할 목적으로 조직한 결합체의 범주에 속하는지 여부에 대하여는 강력한 이론을 제기한 바 있으나 주무부처인 경제기획원 당국의 법형식 이론과 법문의 문리해석에 의한 유권적 행정결정과 권위적 행정력에 밀려 동법절차에 따라 사업자단체 설립신고를 한 바 있음.

5) 또한 협회는 국내유관건축단체인 대한건축학회 및 한국건축가협회와 더불어 상호협조체제를 가지고 있으며

국제적으로도 국제건축문화단체인 UIA (국제건축가협회, 한국건축가협회 가입)나 ARCSASIA (아시아지역건축사협의회, 대한건축사협회 가입) 등 국제기구에도 가입하여 상호공동 관심사항을 비롯한 건축문화관계정보 및 자료의 교환 등 국제협력을 긴밀히 해가면서 회원의 자질향상을 물론 조형창작예술인으로서의 긍지와 자부심을 가지고 이 나라 건축 문화의 창달과 건축물의 질적 향상 그리고

국민의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하여 국가와 사회에 기여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고 있음.

2. 심사보고에 지적된 사항에 대한 의견

가. 심사사항 제 1 (협회윤리규약 제 9 조관련)

협회윤리규약에 의하여 건축사는 건축설계 업무에 관한 여하한 형태의 입찰에도 참가하지 않는다는 윤리적 합의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하는 경쟁제한 행위로서의 위법여부

1) 건축설계업무는 제공되는 모든 서어비스업무의 성질로 보아 그것이 가격경쟁의 대상이 될 수 있는지에 대하여는 일응이론을 제기할 수 있는 문제이겠으나 건축사를 비롯한 의사나 변호사와 같은 전문직업성이 높은 지적업무에 있어 업무의 성질상 그 보수를 가격경쟁에 의한 입찰방식으로 결정할 수 없는 것이며 또한 현실적으로 의사나 변호사를 입찰방식으로 선정하는 예는 없음.
2) 일반 공사와 같이 설계도나 시방서 등에 의하여 업무내용이 확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가격경쟁 방식으로 입찰이 가능하겠으나 설계에 있어서는 그 내용을 사전에 확정시킬 수 없을 뿐더러 설계자의 창의성과 설계결과에 따라 건축물의 가치가 크게 좌우되는 것이므로 금액만에 의존하는 입찰제도로는 행정적으로도 그 집행이 불합리한 것으로 사료됨.

3) 또한 설계자의 선택에 있어서 건축설계자에 절대적으로 요구되는 설계자의 인격, 의견, 기술, 경험, 예술성 및 창작성 등을 감안하여야 함은 많은 외국의 예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이미 일반화된 견해임.

4) 오늘날 사회의 요망은 보다 우수한 공공시설로 보다 좋은 지역사회환경의 조성에 있고 그러기 위해서는 보다 우수한 문화적 창조성과 고도의 기술발휘가 요구되는 시대가 되었음. 보다 좋은 지역사회의 형성과 발전을 위하여 보다 양질의 공공건축의 창조를 요구하는 국민의 요망에 부응하여 건축설계자의 선정에 있어 합리적이고 타당한 대응이 절실한 것임. 설계라는 저작권행위는

결코 가격경쟁입찰방식으로 선정되어서 안되는 것임은 지명한 일이라고 생각됨.

5) 이상에서 말씀드린 사항과 관련하여 건축설계계약방식에 있어 가격경쟁입찰 방식의 문제점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음.
① 건축설계는 조형창작예술작품으로서 규격화된 생산제품이 될 수 없고,
② 입찰대상이 되는 구체적인 설계지침서나 확정된 내용이 없는 입찰은 현행 우리나라 예산회계제도상으로 그 집행이 불합리함.
③ 입찰방식으로 설계자를 선정하는 경우에는 건축물의 질적인 측면에서 양질의 건축물보다 불량건축물을 양산하게 되고,

④ 설계작가의 우열정도와 설계입찰로 인한 낙찰자와는 상반되는 경우가 많을 것임으로 우수한 설계를 기대할 수 없음.
⑤ 따라서 도시환경을 저해하며 미래를 위한 건축문화 유산은 기대할 수 없고,

방법으로서 신인발굴과 공정한 참여에도 도움이 되고 있는 점 등을 감안하여 이 방법의 채택이 바람직스러운 것으로 생각됨.
(참고 : 한국건축 3 단체 “건축설계경기규준”)

8) 특히 건축이 저작권법에서 규정 (제 1 조 및 제 2 조) 하고 있는 회화, 조각, 공예, 악곡 등과 같이 학문 또는 예술의 범위에 속하는 것으로 하여 동법에 의한 보호를 받고 있는 점은 건축업무의 본질적 성질에 대한 법적근거를 명시한 것으로 보며 이는 회화, 조각, 공예, 악곡 등이 경쟁행위 또는 기격경쟁입찰 방식의 대상이 될 수 없는 것과 같이 건축업무도 그 대상이 될 수 없다는 것을 법리면에서 뒷받침한 것으로 받아져야 될 것으로 사료됨.

이와같은 입법취지는 「독점규제 및 공정 거래에 관한 법률」 제20조제 2 항 및 동법시행령 제24조(재판매 가격유지행위가 허용되는 저작물)에서 저작권법 제 2 조에 의한 저작물인 회화, 조각, 공예, 건축, 악곡 등을 그 대상으로 지정하였고 동법 제48조(무체재산권의 행사행위)에서 저작권법, 특허법 상표법 등에 의한 권리의 행사라고 인정되는 행위에 대하여는 이를 적용하지 않는 것으로 동규정에서도 명문화하고 있음.

9) 설계계약방식 또는 설계자선정 방법에 관한 외국의 제도 또는 사례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음.

① 미국의 예

-미국건축·기술자선정법(GAS 방식) -
○미국은 1972년 건축·기술설계자선정법 (A/E 선택법)을 제정·시행하고 있음.

○이 법은 입찰에 의한 선정방법은 설계자 선정에 적합하지 않음으로서 각종심사기준에 의하여 선정하여 계약하는 것임.

○이 법에 의하여 미국총사업 조달국 (General Service Administration –이하 GAS라 함) 이 설계자의 선정에 관한 실시령을 정한 것이 GAS방식임.

○이 법은 국내에 있어서 건축사나 기술자를 선정하는 경우에 공·사를 불문하고 입찰에 의해서는 안된다는 내용으로 되어 있으며 A/E (Architect / Engineer) 선택에 있어 입찰을 거부하는 기본법임.

○또한 건축설계감리를 위탁받은 건축사는 인격·식견·기술·경험·성의·창조성 등을 심사받아야 된다고 되어 있으며, ○이 방식에 있어서는 지불되는 건축사의

업무보수액은 필요한 계약협의사항의 1 요소에 불과하다고 하고 있음.

② 캐나다의 예

(왕립캐나다건축가협회, 제공자료)

○건축가의 업무는 건축사무소의 실적, 전체적인 능력, 연간 수입, 업적 기타 건축 또는 기술의 전문적 분야 등의 데이터를 가지고 회망사무소의 등록을 행하는 절차가 채택되어 왔음.

○이 절차는 어떤 프로젝트에 대응하는 사무소의 「리스트」를 작성하는데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 되며,

○이 「리스트」에 포함된 경우에는 후에 개인적인 접촉과 개인적인 면담에 따라 결정될 것임.

○학교·후생시설 등은 지방자치단체의 기관에서 취급되며 일반적으로 수개소의 사무소와 면담을 하여 그 면담중 받은 정보에 의하여 선정을 하고 있음.

○때때로 무상설계경기에 건축기를 참가해 하고자 하는 경우가 있으나 이 방법은 규정에 위반하는 행위이며 협회의 설계경기규정에 따른 정당한 경기가 아니면 실행되지 않음.

○건축가의 업무는 협회에 의하여 제정된 최저보수율에 따라 제공되지 않으면 안됨
(이 보수율은 정부에 의하여 인정된 것은 아님)

○건축은 설계료의 경쟁입찰로 얻어질 수 있는 것은 아니며, 전체적인 직능자격을 공평하고 합리적으로 고려하고 「요구된 계획」을 장소가 어디이든 그 환경에 소속되며 또한 그 환경을 지지하는 효과적인 건축에 전환될 수 있는 능력에 의하여 얻어져야만 되는것이라 하겠음.

③ 호주의 예

(왕립호주건축가협회, 제공자료)

○빅토리아주에서 건축가를 선정하는 경우의 일반적인 방법은 지방자치단체로부터의 요구에 대하여 협회지부가 간단한 제 1 차 리스트 (3 명정도 연기)를 작성하고 최종결정은 관계자치단체가 행하는 것임.

○공공건물에 대한 건축가 선택의 또 하나의 일반적인 방법은 설계경기에 의한 방법임.

○RAIA (왕립호주건축가협회)의 회원은 보수요율과 행동강령을 지킬 의무를 가지고 있음.

④ 영국의 예

(왕립영국건축가협회, RIBA, 제공자료)

ORIBA는 자치단체의 특별한 요청에 대한 최선의 해답을 어드바이스하기 위해

RIBA의 회장을 장으로 하는 소위원회를 설치운영하여 자치단체의 요청을 분석, 가능한 해결방법을 제안하여 자치단체를 지원하고자 함.

ORIBA의 Clients Advisory Service (CAS)는 특별한 프로젝트에 대하여

건축가를 선정하는데 있어 여러가지

종류의 크라이안트에게 무보수로 자문해

주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고 CAS의

직원은 요청이 있는 경우 그에 알맞는

2~3명의 건축가를 추천함.

OCAS는 크라이안트가 설계경기방식을 행할것을 추천함. 이 방식의 주요이점은 설계상의 문제에 여러가지 해결책을 내주고 새로운 아이디어에 대한 의논을 활발하게 하는데 있음.

ORIBA나 자치단체독자의 정보로

건축가를 수명 선정한 다음에는 그 중에서 최적임자 1명을 선정하는데 자치단체는 선정된 건축가리스트를 검토하여

후보건축가에게 교섭하게 된다. 이때 자치단체가 해야할 일은 다음과 같음

① 개선전적액과 공기의 시지를 주는 것

② 계획인을 추진할 의지를 가지고 있으며 능력이 있고 또한 업무과잉여부를 확인하는 것

③ 제 1회의 면담을 갖는 것

④ 추천된 사무소가 설계한 건물의 시찰

○이 경우에 사무소의 지명 이전에 스케치 도면, 실시 가능성의 조사, 평면도의 제출 등을 요구하거나 작성시켜서는 안됨.

이는 RIBA의 윤리규정에 위반하는 것이 되기 때문임. 전사무소는 RIBA의 업무규정을 지키고 타의 사무소보다 소액의 보수로 업무를 수탁해서는 안되는 것으로 되어 있음. 자치단체는 이에 유의해야 될 것임.

건축가의 선택은 건축가의 장점과 적성에 의하지 않으면 안됨.

⑤ 일본의 예

(일본건축사회연합회 제공자료)

○지방공공단체에 일부기관에서는 건축기를 선정함에 있어 설계료의 경쟁 입찰을 행하는 경우가 있으며 이로 인하여 건축설계의 질과 건축가의 직능에 대해서 바람직스럽지 못한 영향을 주고 있음.

○그래서 지방공공단체에 대하여 그 개선을 요구하는 캠페인을 행하여 왔으나 뷰로크라시의 관습의 힘에 의하여 그 노력은 아직 성공하지 못하고 있음.

〈참 고〉

O이상에서 예시한 외국의 예는 일본
건축사회연합회가 자국의 건축설계계약방식
의 제도 및 운용상의 보완개선의 자료에
공하고자 제외국에 공공건축의 설계업무
위탁의 방법에 관한 자료를 요구하여
수집한 것으로서 그 내용은 충실히 못하나
참고로 요약 정리한 것임.

○당협회에서 보다 광범위하고 충실한 외국의 자료를 수집하기 위하여 해외 각국에 자료를 요청중에 있으나 상당한 시일이 요할것으로 짐작됨(86. 2. 1 싱가폴, 말레이지아, 중화민국의 예를 추가제출)

나. 심사사항 제2 (협회윤리규약 제5조관련)

건축사가 보수의 할인 등 기타 부당한 수단으로 다른 건축사와 경쟁해서는 안된다는 조항이 공정거래질서확립의 입법정신에 위배되는지 여부

- ① 건축사의 업무보수는 그 업무가
아이디어, 식견, 경험, 기술, 창작성 등

전문직능성이 높은 지적업무의 성질상
우리나라 뿐만아니라 외국에서도 일정한
기준을 공인된 절차에 따라 규정화하여
시행하고 있으며 그런 취지에서 우리나라
건축사법 제20조(업무의 보수)에서 명시된
비와 같이 건축사사무소 개설자가 그
업무에 관하여 위탁자에게 청구할 수 있는
보수의 기준을 제31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되는 건축사협회가 건설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이를 정하여 시행토록 하고
있음

② 이에 따라 당협회는 「건축사의 업무 및 보수기준」을 정하여 건설부장관이 인가·공고한 보수를 기준으로 건축사로 하여금 업무활동을 하도록 윤리규약으로 규정하였으며 이를 지키는 것이 그 제도적 취지에 합당한 것으로 판단되며 이 기준을 지키지 아니하고 모든 건축사가 자의로 덤팡행위를 행하는 경우에는 건축설계업무질서는 물론 건축물의 질적 향상이나 건축문화 발전에 커다란 저해요인이 될 것이며.

③ 이는 궁극적으로 건축주나 발주자의 재산권 보호측면에서도 바람직스럽지 않으면 공정거래과제법의 일부처분지에도

위반되는 것으로 사료됨.

- ④ 또한 상호님팡, 기타 이에 준하는 부정, 부당한 수단으로 타건축사의 업무활동을 직접 간접으로 방해를 하고 타건축사가 수탁한 업무를 시술, 기타 비윤리적 방법으로 재수탁하는 등 비리행위를 방지하는 것이 공정거래관계법의 입법취지는 결코 아닐 것으로 판단됨.

⑤ 『법은 보호할 가치가 있는 것을 보호 한다』는 법언을 인용할 것도 없이 부당·부정하고 비윤리적 행위는 어떠한 법에 의해서도 보호받을 수 없는 것이라고 생각됨.

⑥ 보다 싼값으로 설계를 하고 보다 싼 값으로 공사를 하여 보다 싸고 불량한 주택이나 공공건물로 도시미관과 괘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할 수는 없는 것임.

⑦ 우리는 지난날 주택과 공공시설 등의 절대량이 부족했던 『저렴과 조합의 시대』를 지나 이제 국민과 도시와 지역사회가 보다 향상된 『두뇌와 질의 시대』로 이행하고 있으며 따라서 정부도 그러한 사회·문화적 정책방향으로 국민을 유도하는 것이 바람직스럽다고 생각됨.

⑧ 당협회는 정당하고 성실하게 윤리적으로

공정거래관계 보도사례

【11】 제12570号 (陰曆 6月27日 戊寅) 1版

간축설계 韓非...伏中攻防 한창

“**‘공개 입札 금지 조항 不公正 행위**” 판정에 당국·협회 대립

「おまえ、やがておまえの身代りを取る日が来る。おまえの身代りを取る日が来る。おまえの身代りを取る日が来る。」
「おまえの身代りを取る日が来る。おまえの身代りを取る日が来る。おまえの身代りを取る日が来る。」
「おまえの身代りを取る日が来る。おまえの身代りを取る日が来る。おまえの身代りを取る日が来る。」

엄청난費用談合가능성이
創作활동…法廷싸움不辭

부당하지 않는 상호경쟁으로 회원을 유도하여 공정거래질서를 확립하고자 이 윤리조항을 제정 시행하고 있음.

관계기관질의회신내용 요약

문화공보부 질의회신

질의요지 : 저작권법 제 2 조의 규정의 건축이라 험은 당해 건축물을 작성하기 위하여 작성하는 설계도서를 말하는지 여부 및 동법 제 4 조의 규정의 저작자라 험은 저작물을 창작한 자 즉 동법 제 2 조의 규정 중 건축의 경우 당해 건축물을 건축하기 위한 설계도서를 작성한 자를 말하는지 여부(86. 1. 9 본협회)

회신내용 : -저작권법 제 2 조에 열거된

저작물의 예시는 어디까지나 예시규정이자 한정적 의미의 제한규정이 아님. 따라서 건축저작물에는 건축물 그 자체와 그 설계도면이 모두 포함됨.

-건축저작물의 저작자는 그 설계도면을 작성한 자를 말하며 건조 등의 방법으로 건축물을 완성하는 것은 저작자의 저작권(현행법 제23조의 실시권) 행사인 것임

(86. 1. 27 문화공보부)

재무부 질의회신

질의요지 : 저작권법에서 건축이 회화, 조각, 공예 등과 같이 저작물로 규정하여 보호하고 있고 건축설계의 경우 설계자의 구상과 창작성이 요구되는 바 가장 합리적이고 비범칙한 설계계약 방법은. 의 견 : -건축설계는 규격화된 상품이 아니고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업무로서 개인의 예술성과 창작성은 물론 그 시대의 문화성을 강하게 반영하며 그 성과물이 각기 다르고 계약당시 실제가 없는 상태이므로 가격경쟁에 의하는 것이 합리적이 아니며 정형화 및 단순화된 건축(주택, 학교, 경찰서 등) 설계업무는 당부에서 표준설계도서로 201종을 작성, 각시도에 배포하여 누구나 동설계도서를 설계비없이 활용토록 제도화하고 있어 계약에 문제가 적을 것으로 사료됨.
-예산회계법 시행령 제112조 제 1 항 제 1 호 “계약의 성질 또는 목적에 의하여 특정인의 기술, 용역, 설비 — 중략 — 인하여 경쟁을 할 수 없는 경우로서 재무부장관이 정하는 때”란 예산회계법의

기본 원칙인 일반경쟁입찰에 의함이 그 집행대상 사항의 성격이나 목적으로 보아 합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수의계약에 의하여 집행하도록 하는 것을 전제로 하고 예외 조항을 엄격하게 운영하고 재무관의 임의적인 재량판단을 축소하기 위하여 재무부령으로 열거한 것이며, 최소한 재무부령인 계약사무처리 규칙 제39조 제 3 호 가목 “학술연구, 설계, 조사 — 생략 —”의 열거사항은 일응시행령의 요건을 충족한다고 보고 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도록 한 취지로 보아야 함.

-1960년대 이후 현재까지 설계저작자 선정방법은 대부분 수의계약과 설계경기 방식이 있는바 설계경기 방식에 있어서는 일반공개와 지명에 의거 집행처리하고 있음.) (86. 4. 1 건설부)

회신내용 : 국가기관에서 시행하는 설계용역 계약에 있어서 예산회계법 시행령 제112조 제 1 항 제 1 호 및 계약사무처리 규칙 제39조 제 3 호 가목에 의거 특정인의 기술을 요하는 경우에는 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으나 그러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경쟁계약에 의하여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86. 4. 12 재무부)

1986年6月25日 (水曜日)

